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7명(소방장 1명, 소방위 3명, 소방경 1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위 1명, 소방경 3명, 소방령 1명, 8급 2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9조제1항 관련)”을 “(제9조제1항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2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소방경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2명으로 본다.

.

[별표 3의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267
소방공무원 계	231
소방총감	1
소방정감	1
소방감	4
소방준감	7
소방정	17
소방령	61
소방경	58
소방위	61
소방장	15
소방교	6
일반직 계	36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기술서기관 · 의무사무관 또는 소방령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의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9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간호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기록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간호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간호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	3

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무운영서기보 또는	
소방사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항공관제 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항공관제 담당)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u><단서 신설></u>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u>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3]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	<u>(제9조제1항 관련)</u>	<u>(제9조제1항 본문 관련)</u>	
•	•	•	
•	•	•	